`

HSBC 파워 더블찬스 지수 예금

제 1조 적용범위

이 약관은 대한민국내의 홍콩상하이은행 지점("은행")과 고객간의 **HSBC 파워 더블찬스 지수 예금** ("예금") 거래에 대하여 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, 거치식 예금약관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약관에 추가하여 적용된다. 만약 이 약관과 예금거래기본약관, 거치식 예금 약관 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약관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이 우선한다.

제 2 조 예금의 종류 등

① 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한다.
② 이 예금의 가입기간 및 최저 가입금액은 은행이 별도로 정하여 공지한다.

제 3 조 용어의 정의

① 이 약관에서 "지수"라 함은 주가지수, 환율, 금리, 채권 등 예금가입 시점에 은행이 지정하는 시장지수를 의미하며, 개별 지수연동예금에 해당하는 시장지수는 은행이 별도의 설명서를 통해 공지한다.
② 이 약관에서 "기준지수"라 함은 예금 가입일에 은행과 고객이 사용하기로 합의한 지수로서 예금개시일의 해당 지수의 마감 지수를 의미한다.
③ 이 약관에서 "만기지수"라 함은 예금 가입일에 은행과 고객이 사용하기로 합의한 지수로서 만기 지수 결정일의 해당 지수의 마감 지수를 의미한다.
④ 이 약관에서 "**HSBC 파워 더블찬스 지수 예금**"이라 함은 그 예금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수의 변동에 연결되어 있는 원화 또는 외화표시 정기예금을 말한다.
⑤ 이 약관에서 "예금 가입일" 이라 함은 고객이 은행에 실제 자금을 예치하는 날을 말한다.
⑥ 이 약관에서 "예금 개시일" 이라 함은 지수연동이자가 예금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날을 말하며, "예금 만기일" 이라 함은 예금 가입일에 은행이 고객에게 예금 만기일이라고 알려주는 날로서 지수연동이자는 예금 만기일까지 적용된다.
⑦ 이 약관에서 "참여율"이란 기준지수 대비 만기지수 변동률에서 고객이 수익으로 받아가는 비율을 의미한다.

제 4 조 이자의 지급

① 은행이 예금의 모집기간을 설정하는 경우, 은행은 모집기간, 예금개시일, 예금만기일 및 최소예치금액을 결정하고, 예금 가입일에 고객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 이 예금의 모집기간의 이자는 고객이 가입금액을 예치한 요구불 계좌의 이율로 한다.
② 이 예금의 이자는 예금 가입일에 은행이 고객에게 알려준 지수연동이자의 지급조건 (참여율 포함)에 따라 해당 지수의 변동에 의해 결정된 이율로 계산되며, 동 이자는 해당 지수의 변동 정도 및 은행이 알려준 지수연동이자의 지급조건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.
③ 은행은 지수연동이자의 지급조건을 각 영업점에 고시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한다.
④ 이 예금의 이율은 법령에 의거한 최고 이자율의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 변경될 수 있다.

제 5 조 지급시기

① 이 예금은 예금 가입일에 은행과 고객간의 합의에 따라 예금만기일에 고객이 지정한 요구불예금 통장으로 지급되며, 은행이 예금만기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, 은행은 예금 및 이자의 지급시기 및 방식을 먼저 결정하고 예금 가입일에 이를 고객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
② 예금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,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영업일을 예금만기일로 한다. 이 경우 예금 일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에 대해서는 제 4조 2항에 따라 결정되는 이자율로 이연될 일수만큼 계산된 이자를 지급한다.

제 6 조 중도해지

고객이 예금개시일 이후 예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은행은 예금 가입일에 정해진 중도해지 수수료를 초기 예치 금액에서 차감한 후 지급한다.

제 7 조 원천 징수

본 예금의 만기시 이자부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은 원금을 상회하는 이자지급액 전액에 대하여 계산된다.

제 8 조 양도 및 담보제공

① 이 예금은 은행의 사전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.
② 이 예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계약의 이자는 은행이 정한 대출의 기본금리에 별도로 은행이 정한 이율을 가산하여 계산한다.

제 9 조 지급장소, 정부조치 등

① 이 예금거래 하에서 발생하는 지급의무의 이행은 오직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진다.
② 은행은 불가항력, 정부조치 등 은행에 귀책사유가 없는 원인으로 인한 금전의 지급불능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, 이 경우 은행의 본점 및 대한민국 외에 소재 하는 어떠한 지점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. 다만, 그로 인한 의무이행이 보류된 경우 위 지급불능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고객의 청구에 따라 즉시 지급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.

수신030-01(2008.10.09)